

2020. 6. 20 소방관계법규 공채시험 총평

과거와 마찬가지로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출제문제와의 차이점은 문제의 지문들이 길어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몇 해 전부터 기출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여러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습득해야 소방관계법규의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소방관계법규(2020. 6. 20 공개경쟁채용시험)

1.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④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41(1쇄 P 45)]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3)

-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4. 단전사고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①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 ②

2.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나)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
| (가) | (나) |
| ① 소방청장 | 3년 |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2(1쇄 P 26)]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법 제10조)[19·14·12 공채, 09 중앙·전북, 08 대구·중앙·경북·인천·강원, 07 광주·서울·대전·충남, 06 충북·부산·제주·경남·중앙·울산]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답 ④

5.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ㄱ. 소방안전관리자	ㄴ. 의무소방원	ㄷ. 자체소방대원
ㄹ. 의용소방대원	ㅁ. 자위소방대원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10(1쇄 P 14)]

정의(법 제2조) [18·16 공채·특채, 13 공채, 09 충남·부산·서울, 08 부산·중앙·서울·경기, 07 전남·대전·부산, 06 광주·부산·중앙, 05 부산·전남·울산·서울·경기·중앙]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

된 조직체를 말한다.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답 ②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대 ② 방열복
③ 시각경보기 ④ 비상조명등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86(1쇄 P 90)]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답 ③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고시설

②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④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38(1쇄 P 242)]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9·16·15 공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답 ③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가)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나)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가)

(나)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기존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증축 부분은 증축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124(1쇄 P 128)]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 ②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정·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제외한다) : 3년

답 ③

13.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가)에게 알리고, (나)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 | |
|---------|-------|
| (가) | (나) |
| ① 관계인 | 공사업자 |
| ② 관계인 | 소방서장 |
| ③ 소방본부장 | 공사업자 |
| ④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45(1쇄 P 24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법 제19조)

-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③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답 ①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④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52(1쇄 P 256)]

공사의 도급(법 제2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법 제21조의2)

-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도급의 원칙 등(법 제21조의3)

-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하도급의 제한(법 제22조)

-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답 ③

15.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④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87(1쇄 P 291)]

벌칙(법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답 ①

1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숫

자로 옳은 것은?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가)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나)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나)

- ① 15 14
- ② 15 30
- ③ 30 14
- ④ 30 30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333(1쇄 P 337)]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 ① 제조소 등[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①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① 및 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 ①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③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383(1쇄 P 387)]

벌칙(법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법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 제4항(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답 ④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위험물”이라 함은 (가) 또는 (나)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 (가) | (나) | (다) |
|-------|-------|--------|
| ① 인화성 | 가연성 | 대통령령 |
| ② 인화성 | 발화성 | 대통령령 |
| ③ 휘발성 | 가연성 | 행정안전부령 |
| ④ 인화성 | 휘발성 | 행정안전부령 |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95(1쇄 P 299)]

정의(법 제2조)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답 ②

19.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③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④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295(1쇄 P 299)]

정의(법 제2조)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 등 :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답 ②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장장치 ②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해설 [금화도감 정경문 소방관계법규 P 302(1쇄 P 306)]

시행규칙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 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③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답 ④